

정의라는 개념의 두 차원

李 鍾 殷 (국민대)

I. 서 언

正義(justice)라는 개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사회라면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정의라는 개념이 이와 같은 보편성을 가지는 것은 이른바 機能的 等價性(functional equivalence)의 수준에서 그렇다는 의미이지, 그 개념이 모든 정치사회에서 동일한 무게와 내용을 가진다는 말은 아니다. 실제로 그 개념의 내용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편차를 보이며 그 개념 자체에 실리는 중요성도 인간 사회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래서 한 사회의 내부에서조차 이에 관한 합의가 뚜렷한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처럼 복잡다단한 정의라는 개념의 전모를 해명하는 데에 있지 않다. 본고의 주제는 1970년대 이래 그 사용 빈도가 높아졌고, 여러 방면에서 논의의 주제가 되어 이제는 하나의 독자적인 연구 영역을 형성할 단계에 이른 소위 配分的 正義(distributive justice)에 대한 것이다.¹⁾ 그런데 배분적 정의라는 개념은 원래 정의 일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의미에서 배분적 정의는 정의의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배분적 정의와 정의 일반의 차이는 그 範域의 포괄성 정도에 있다기 보다는 같은 주제를 두고 공략하는 방법상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²⁾

1) 이 분야를 대표할 만한 문헌으로서 몇 가지만 언급한다. James M. Buchanan, *Liberty, Market and State: Political Economy in the 1980s*(Brighton, Sussex: Wheatsheaf Books, 1986); Eric Rakowski, *Equal Justice*(Oxford: Clarendon Press, 1991); Peter D. McClelland, *The American Search for Economic Justice*(Basil Blackwell, 1990); 이준구, 『소득 분배의 이론과 현실』(다산출판사, 1989).

2) 영어 단어 "distribution"을 "배분"으로 번역하느냐 "분배"로 번역하느냐, 나아가 할당

그러므로 배분적 정의를 논하기에 앞서 일정한 정도의 방법론적인 고찰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의 일반(justice as such)과 배분적 정의라는 두 개념에 포함되는 내용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위상을 해명하고, 배분적 정의라는 개념을 통하여 정치사회의 모습을 진단·처방한다는 것이 어떠한 인식론적 태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해명을 함으로써 배분적 정의를 보다 선명하게 구획짓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며, 그리고 그 주제를 공략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취하여야 하는지를 밝히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II. 정의라는 개념의 두 차원

정의는 특별한 사회적인 개념이다. 예컨대 천재의 요절을 두고 사람들은 안타깝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정의 또는 불의를 논하기는 어렵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善行이 행해질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정의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어떠한 제약 또는 장애에 인간의 의도나 무관심 또는 태만 등이 개입되었다면, 비로소 정의와 불의를 논할 여지가 생겨난다. 이처럼 정의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회적인 개념이다.

정의라는 개념에는 또한 일종의 分別 또는 判斷이 함축되어 있다. 개인 또는 집단이 複數의 행동 경로와 마주쳤을 때, 정의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그 가운데 어느 경로를 택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

(allocation)과 배분(또는 분배)를 구분하여 접근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연결선상에서 파악하느냐의 문제가 이와 맞물린다. “분배”라는 번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적 생산의 과정은 논외로 치고, 주어진 생산량을 나누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그러므로 논제가 이렇게 설정되면 당연히 여타 사회적 가치의 할당은 분배의 문제와 일단은 별도의 영역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분배적 정의”는 전형적으로 정의 일반의 하위 개념이 된다. 예컨대 홍두승 “분배적 정의와 형평의식”, 황일청 (편),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형평』, 나남, 1992)과 이준규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1989) 등이 “분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의미가 그것이다. 반면에 본고는 정치적 결정이 “정의”라는 명분 아래 권위를 가지려면 그 명분이 어떠한 요소들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 문제에 관하여 “배분적 정의”라는 개념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을 밝히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생산과 분배 양 측면이 포괄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물질적 재화 이외의 가치들도 논의 대상에 편입된다.

황에서 정의 그 자체(justice as such) 또는 불의 그 자체에 대한 이론적 분별이 항상 명쾌하게 행해져야 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적 분별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그 상황이 요구하는 바, 선택과 분별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의는 언제나 이런 저런 형태의 결정(decision)과 내면적으로 연관되는 개념이다. 행동 경로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이 보다 정의로운지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은 결정이 이미 내려진 다음에도 그 결정이 과연 정의로웠는지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정의가 문제된다는 것은 당면한 現狀(status quo)을 어떤 정도로든 벗어나서 관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반성적 관조의 가능성이 일단 마련되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장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관조할 인식의 가능성이 마련되었다는 것과 같다.

사회적 관계, 분별과 결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은 정의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담고있는 속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와 일종의 분별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정의라는 개념은 실제로는 여러 갈래로 적용될 수 있다. 정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질문이 각각 지향하는 초점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여기서서는 그 초점들을 두 개의 차원으로 대별하고자 한다. 첫 번째 차원은 한 사회가 어떤 종류의 사회인지를 시사해 주는 것이며, 두 번째 차원은 해당 사회의 내부에서 가치의 할당(allocation)이 정의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것이다. 굳이 명명하자면 첫 번째 차원은 정의의 개념이 인간 사회와 형태적으로 맺는 연관을 가리키며, 두 번째 차원은 그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가리킨다고 하겠다.

첫째, 모든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의라는 개념을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한 사회가 무엇을 정의로 여기며 그것을 얼마나 숭양하는지에 따라 그 사회는 다른 사회로부터 질적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구분시키는 것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character)이다. 예컨대 식량을 공유하는 이누이트(Inuit) 사회에서는 겨울철에 이웃과 식량을 나누는 것이 정의라고 여긴다. 이에 비하여 사유 재산 제도가 세밀하게 발달한 서유럽의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획득한 몫에 대하여 타인이 간섭하지 못하는 것이 정의이다. 모든 국가가 정의의 기반 위에 서지 않을 수 없다는 플라톤의 언명³⁾은 바로 이처럼 정의라는 개념

이 가지는 형태적 본질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각자 자신의 일을 한다”⁴⁾는 플라톤의 定義는 전형적으로 正義의 개념적 형태(conceptual form)에 착안한 定義이다.

다른 한편 흄은 功利(utility)의 측면을 파고들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다.⁵⁾ 동물의 種은 각기의 생존에 필요한 욕구(needs)와 이에 상응하는 육체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맹수는 육식에 적합하게 강한 발톱과 이빨 그리고 근육이 있다. 반면 초식동물은 식물의 粗野한 조직을 소화할 능력이 있다. 이처럼 큰 동물은 큰 만큼, 작은 동물은 작은 만큼 각자의 사정에 적합한 필요와 그 필요에 부응하는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써 각 개체는 개별적으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 인간의 신체구조는 생존을 위한 필요와 상호 부합되지 않는다. 인간은 강한 발톱도 이빨도 없다. 조야한 섬유질을 소화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털도 가죽도 없다. 이처럼 생존에 필요한 육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인간은 어떤 동물보다도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 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으며, 인간은 사회로부터 획기적인 이득(goods)을 얻을 수 있다.⁶⁾

이와 같이 보면 인간은 사회에서 살아야만 하며, 그 사회를 형성 유지시키는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정의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인간의 선천적 본성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흄은 가졌다. 따라서 정의는 인간의 본성과는 상관이 없다고 흄은 보았다. 그러나 인간 본성에 관하여 흄의 입장에 동조하든 말든,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정의와 사회의 연관을 해명한 그의 논지는 여전히 흥미할만한 가치가 있다. 즉, 하나의 공동 이익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가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어떠한 형태로든 그리고 어떠한 정도로든 구현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취약한 신체구

3) *Republic*, Bk. II.

4) *Ibid.*, Bk. IV, 433b. 회랍어 *to ta autou prattein* 을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자신의 일을 한다”가 가장 가깝지만, 여기에는 “자기 몫을 가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5) Davi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Oxford: Clarendon, 1978), Bk. III, Secs. I & II.

6) 사회가 개인들 간의 계약으로써 시작되었다는 은유에 대해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가한 이가 흄이다(Cf. “Of the Original Contract,” *Essays Moral and Political*, 1748). 그는 그 은유가 관습과 전통의 중요성을 완전히 망각한 착각이라 비판하였다. 한편 그의 공리주의는 결과적으로 로크의 자유주의와 주파수가 일치한다. 왜냐하면 양자 공히 공동의 이익에 입각하여 정부의 역할과 필요성 및 한도를 분명하게 구획하였기 때문이다.

조를 가진 인간들이 자연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이익을 얻기 위하여 각자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개인들은 자신의 권리(rights)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권리라는 개념은 다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및 신뢰라는 개념을 다소간 함축할 수밖에 없다. 남이 나의 권리를 존중해 줄 때, 그만큼 나는 남을 신뢰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내가 속한 사회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남이 나의 권리를 무한정으로 존중해줄 수는 없다. 여기에는 상호간에 일정한 한계와 절도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정의가 그러한 한계와 절도를 인도한다는 것을 개인이 수긍할 때에 그는 그 사회의 일반적 질서를 동시에 신뢰하게 된다. 이로써 사회의 생활에는 안정과 평화의 기틀이 자리잡게 된다.7) 그렇게 됨으로써 자연을 상대하기 위한 인간의 협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권리(right), 평등(equality), 공정(fairness), 형평(equity), 올바름(righteousness) 등이라는 개념은 정의와 친족관계에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도 형태의 차원에서 사회와 개념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정의에 관한 논의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다양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공정에 관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는 느낌 또는 관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통틀어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라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일종의 규칙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그러한 규칙이 사회 구성원들의 행태 속으로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公正의 感覺(the sense of fairness)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통틀어 주장하였다.8) 이러한 점을 착안하면, 정의와 이에 연관된 개념은 구성원들이 사회의 구성에 근간을 이루는 부분에 대하여 수긍 또는 승인을 표하는 측면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의 역할이 진밀하게 이루어질수록 개인들의 사회생활은 안정되고, 그만큼 해당 사회의 인간 관계가 밀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물리적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개인들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정신적 기반이 그만큼 공고하게 되는 것이다.

정의는 이와 같이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지

7) Davi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op. cit., pp.489 ff.

8) John Rawls, "Justice as Fairness," Peter Laslett & W. G. Runciman eds., *Philosophy, Politics, and Society*, 2nd Series(Blackwell, 1972), pp.132-157.

만 정의와 사회 사이의 형태적인 관계가 정의의 내용에 대하여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정의는 구체적인 사회 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개별적 분별과 판단 및 결정을 통해서만 실질적 모습을 드러낸다. 특정한 배분적 상황에서 가치가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배분에 관하여 어떤 사회적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정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불만 또는 지지의 형태로 벌어지는 논쟁을 어떻게 판가름하느냐에 따라서 정의는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앞에서 언급한 정의의 두 번째 차원, 즉 정의와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적 관계이다.

두 번째 차원에서 벌어지는 정의에 관한 논의는 개인 및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라고 환언할 수 있다. 여기서 “利害”란 도덕주의자들이 뜻하듯이 道義와 대립되는 의미가 아니다. 이른바 “세속적” 名利는 분명히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오직 그것만이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어느 누가 어떤 도덕적 가치를 구현하기를 바란다면, 이를 실현하는 데에 어떠한 사회적인 장애물이 어느 정도 존재하느냐는 것도 이해관계의 일종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단적인 예로서, 소크라테스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도덕적 가치를 표상한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인물을 사회가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해당 사회의 도덕적 성격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 경우 “사회적 대우”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세속적 가치의 배분과 직결되지 않을 수 없다. 데이비드 이스턴이 “價値의 權威的 割當”(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으로써 정치를 정의하면서 가치라는 단어를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⁹⁾

정의의 문제가 실질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될 때에는, 논의의 일차적인 초점은 당사자의 요구 또는 주장에 모이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이 차원에서 논의되는 “권리”나 “평등” 역시 각 이해당사자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정당화하는 名分으로서 제시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분을 순전히 구실 또는 口頭禪에 불과하다고 격하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어떠한 이익이 주장될 때 그 주장에 전체 사회의 구성원이 의미상으로 포괄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이익의 명분으로서 정의나 권리가 주장된다면, 이 또한 그 단어들에 담겨 있어야

9) David Easton, *Political System*(New York: Alfred Knopf, 1953), p.135.

할 본연의 의미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처럼 정의가 사회적 이해관계와 연관될 때 그러한 주장들의 외형만 보아서는 사적인 관심과 공적인 관심이 구분될 수 없다. 그렇다면 외형이 아니라면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인가? 어떤 정치적 주장이 공적 관심을 대변하는지 사적 관심을 대변하는지를 가름하려면 물론 그 외형보다는 내용을 살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각 주장들의 공적 성격 또는 사적 성격이 획일적인 방식으로는 식별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익 가운데 본질적으로 공적인 부류의 이익과 본질적으로 사적인 부류의 이익을 구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이익이든지 개인이 펼치는 주장의 형태로 표출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정치적 주장은 개인이 제시하는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 공익 또는 사익의 요소를 식별해야 한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사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사익들을 조직하는 방식에서 공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사익들을 조직한다는 데에 이미 모종의 공공적 지평이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런데 그 지평이 얼마나 整合的으로(coherently) 건설되느냐에 따라 공익의 표출 여부가 좌우된다. 이처럼 사익을 위한 정당화 논리로 동원되는 정의가 사익에만 몰입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바로 이 고찰의 주목적이다.

정의에 관한 논의가 이익의 주장이라는 형태로 전개되면, 그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두 가지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주장의 두드러짐(salience)이고, 다른 하나는 주장이 가지는 강도(intensity)이다. 이들 두 요소가 정치적 논쟁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의의 내용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는 사회 내에 분포하는 여러 세력 사이에 경쟁적인 형태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물론 잠복적 이슈나 미약한 목소리를 내는 주장이라고 해서 정의의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구조적 제약 및 의사소통의 평형 등의 문제도 정의와 관련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어쨌든 이른바 “숨어있는 문제들”이 숨어 있기만 한다면, 이는 정치적 논쟁의 주제로 등장할 수 없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은 곧 그 문제를 구심점으로 하여 하나의 정치 세력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잠복적 문제 또는 보다 약착스럽지 않은 주장까지를 포괄하여 고려하더라도, 정의의 문제가 이해관계의 지평에서 논의될 때에, 그 논의는 세력의 사회적 균형(social balance of

power)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정의의 두 차원, 즉 그 형태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은 곧 정치의 두 차원과 상호 부합된다. 정치 역시 전체 사회의 正體, 品格 및 運命과 관련되는 면이 있는 반면에, 단순히 사회내의 이익 경쟁이라는 측면도 동시에 있다. 그런데 사익간의 경쟁, 즉 사회세력간 이합집산의 결과에 따라 정치적 결정을 하도록 방임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회의 진로가 가치의 지표를 상실하게 된다는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표준을 구하여 그에 따라 방향타를 설정한다면, 이에는 專制 및 獨斷이 개재할 우려가 있다.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종류의 난제를 항상 찾을 수 있다. 요컨대 개별성과 보편성 사이에 일어나는 긴장은 인간사(human affairs)에 관하여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마주치게 되는 난관이다. 그렇다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개인들의 정신적 측면, 즉 良識과 交感에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 가지는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개인간의 편차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 대부분은 정의에 대하여 일정한 감수성과 어렵 못한 동경을 공유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名利와 道義를 구분하는 것이 아무리 희미하더라도, 한 개인의 주관 안에서 名利가 道義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가 - 그 반대의 경우보다 빈번하지는 않겠지만 - 드물지는 않다. 동양의 선현이 경고하였다시피 道心이란 본시 隱微한 만큼¹⁰⁾ 여기에 지나친 기대를 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정의에 대한 일정한 감수성을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이 두 차원의 정의 사이에 균형이나 조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사람에게서 정의를 추구하는 일을 단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말할 수 있다. 우선 요청되는 것은 이 난제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순을 종합할 수 있는 眼目, 즉 概念圖(conceptual map)를 마련하는 일이라 하겠다.

III. 도덕과 정치

정의라는 개념에는 사실 앞에서 논한 차원 이외에 또 하나의 차원이 있다.

10) 『書經』(虞書, 大禹謨),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그것은 개인의 修身과 관련된 차원, 즉 정의로운 인생에 대한 관심이다. 앞에서 구분한 형태와 실질이라는 두 차원은 의미상으로는 일정 부분이 중첩되는 것처럼, 개인적 修養이라는 측면도 정의가 가지는 사회적 측면과 내용상으로는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측면들을 마구잡이로 뒤섞을 수는 없다. 공공의 영역과 개인적인 영역 사이에 일정한 구분이 획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정치적 논쟁은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 하물며 권위적 집행, 즉 유사시 강제력의 발동을 전제로 하는 정책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강제집행(enforcement)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과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개인적 수신의 목표로서 정의는 그 본질적 특성이 공권력의 영역 밖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구분함으로써 야정국가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나 체제와는 관계없이 수신의 차원과 공권력의 차원을 혼동해서는 아니된다. 그 이유로 적어도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표명되는 政治的 言說과 主張에서는 자주 혼동되는 바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첫째, 인간의 행태 가운데에는 정의/불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상관이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 일례로 여가에 TV를 시청할 것인지 독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낮잠을 청할 것인지의 선택은 분명히 사회적 의미, 나아가 경제적인 의미까지를 가지는 행위이다. 하지만 여기에 정의/불의의 잣대가 적용될 소지는 매우 특별한 사정이 추가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다. 요컨대 “정의로운 행동”에 속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해서 곧 “불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동일한 선택 상황이라 하더라도 一人稱의 視點에서 접근하게 되면 그 모습이 사뭇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어떤 가치 - 예컨대 格物致知에서 治國平天下로 이어지는 「大學」의 八條目 - 를 필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나아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一寸光陰을 아껴야 한다고 각오를 날마다 새롭게 한다고 해보자. 이런 유형의 주관성 안에서는 자신의 낮잠이 수치스러운 뿐만 아니라 불의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류의 주관성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지만, 이로부터 사회적 규범을 추출해 내려고 하는 순간에 독단론과 교조주의가 탄생한다. 물론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는 여가에 대하여 사회적 강제력이 침투해야 하는 경우 - 일례로 전쟁 중의 군대 -

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그러한 침투가능성은 정치사회 전체를 고려한 필요에 입각하여야 하는 것이지 특정한 주관성이 지향하는 수신이 요구하는 바로부터 도출할 수는 없다.

둘째, 논의의 대상을 정의와 상관있는 부류의 행동에 한정하더라도, 어떤 행동에 관하여 정의 여부를 문제삼을 수 있다는 말은 정의 여부를 판명할 수 있다는 말과는 다르다. 예컨대 프랑스의 교육행정관이 바칼로레아의 철학 시험을 채점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채점은 명백히 정의의 문제를 포함하는 행위이다. 대학생 선발 제도 자체 및 출제된 문제의 취지에 부응하여 보다 우수한 자질과 품성을 드러낸 답안에 보다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정의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이는 분명히 불의이다. 하지만 누가 채점을 하는 채점 결과가 어찌되든, 어떤 채점 행위와 그 결과가 정의인지 아니면 불의인지를 논란의 여지 없이 판정할 수 있는 경우는 상상하기가 거의 어렵다. 실제 상황에서 제도의 취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되며 우수한 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특정 채점 행위가 정의에 합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역시 여러 방향으로 엇갈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이른바 “경계의 모호성” 때문인지 아니면 “기준의 복잡성” 때문인지를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가 어떠하든, 주관적 도덕의 차원에서는 모호성과 그 복잡성은 현저히 줄어들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사람이 아닌 한, 채점관은 나름대로 정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또 정의를 자신의 사익으로 환원시키려는 사람이 아닌 한, 그 채점 결과에 불만을 표하는 학생 역시 나름대로 일관된 정의의 관념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관의 영역에 머무르는 가치를 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혼동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것을 혼동하면 결국 暴政만이 남게 된다.

셋째, 사회의 정상적 구성원들이 한 목소리로 불의라고 판정한다고 해서 모두 자동적으로 정책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물건을 빌어 쓰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명백한 불의이다. 친구에게서 책을 빌어 보고 돌려주지 않는 것도 틀림없는 불의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의를 정책으로써 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법규의 조항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책이 매우 희귀한 골동품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또는 그

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개재하지 않는 한, 책 한 권을 돌려받기 위하여 訴訟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제기하더라도 대부분의 변호사 및 판사가 그것을 소송 거리가 된다고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정책적 규제는 그 자체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무엇을 그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서부터 비용과 효과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점에서도 수신의 목표와 정책의 목표는 질적으로 다른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점들에서 도덕은 정치와 혼동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는 도덕적 가치는 정치적 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두 영역 사이에는 일정한 내면적 연관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두 영역이 완전히 겹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여, 도덕적 이상이 정치 생활의 양상을 인도하는 방식 및 정치적 생활 양식이 도덕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여지 및 방도 등등, 도덕과 정치가 서로 접촉하는 통로의 크기와 모양이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여야 한다. 이는 록크, 흄, 스미스, 밀 등의 소위 철학적 자유주의자가 전형적으로 전개하는 논지이지만, 그 취지는 정치에서 도덕을 배제하는 데 있다기보다 정치적 권위의 範域(scope)을 구획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문제제기와 해설을 통하여 正義가 문제될 수 있는 차원이 여러 가지임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정의를 논의할 때에 그 논의의 초점 및 논의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이는 곧 정의에 관한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방법론적인 선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즉, 것처럼 다양한 차원과 논의 방식을 모조리 뒤섞어서는 생산적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익간의 조정이라고 하는 量的 配分의 문제에 논의의 방식을 국한하려 한다. 한편 이와 같은 구획은 앞서서도 강조하였듯이 결코 정의와 사회의 형태적 연관 및 정의의 도덕적 의미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두 차원이 본고의 표면적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한 차원에 대한 일정한 감수성을 배제하고는 정의에 관한 논의가 表裏의 일치를 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 두 차원을 논의의 형식에서는 뒷전으로 미루되, “이익” 및 “양적 배분” 등의 의미를 확장함으로써 내용상으로는 그 차원들과 실질적인 接點을 유지하고자 한다.

동양의 정치적 어휘에서 利益이란 대체로 義理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다.¹¹⁾ 그리하여 이익이라는 단어는 대개 물질적 자원 및 지위나 명예의 획득과 보유 등등, 보다 세속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관점을 나타내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義理는 그러한 자원들을 획득하는 과정이 떳떳한지의 여부를 문제삼는 시각을 대변한다. 일상 언어의 수준에서는 서양 말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일례로 영어에서 이익을 뜻하는 단어(advantage, interest)들은 부와 명예 및 지위 등 전형적으로 세속적인 利權을 의미하는 반면에, 옳음을 뜻하는 단어(justice, legitimacy, righteousness)들은 그와는 별도의 관점을 대변한다. 즉, 세속적인 이권만으로는 해명될 수 없는 차원의 관심이 후자의 단어에 의하여 표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interest라는 단어가 정치이론의 분야에서 사용될 때에는 이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 안에 포섭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된 의미를 가진다.¹²⁾

개인들이 선호하는 가치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가치 사이에 개인들이 설정하는 우선 순위(priority)도 다양하다. 그만큼 그 우선 순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근거 혹은 논리도 다양하다. 이러한 점들은 결국 정치적 주장이 다양하다는 사실에 덧붙여, 그 다양성 자체가 평면적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갑, 을, 병, 정 등등, 복수의 개인들이 떡 하나를 놓고 각자 자신의 몫을 조금 더 크게 하려는 주장들만이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가치까지도 정치적 주장의 핵심 요소가 된다. 이때 이른바 “공익”이라는 단어는 전형적으로 개별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가치 가운데 하나이며, 따라서 공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다양각색일 수밖에 없다. 즉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주장 그 자체가 한 가지의 정치적 이익(interest)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려한다고 해서 공익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익의 실체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그 말이 수사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는 것이

11) 일례로 『論語』(里仁),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12) 이는 서유럽권의 정치적 저술에서 공통되는 바이지만, 굳이 예증을 위하여 두 개의 문헌만을 언급하겠다. William Connolly, *The Terms of Political Discourses*(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Jürgen Habermas,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Boston: Beacon Press, 1972).

다. 공익과 사익이라는 언어적 구분에 매달리는 한, 언어의 그림자가 빚어내는 허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정의에 관한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언어를 재편성할 필요가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익이 가지는 의미를 이처럼 확장하는 의의는 논의의 초점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데에 있다. 도덕적 가치가 다양한 만큼, 도덕에 관한 어휘들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모든 혼란을 방치한 상태에서는 중구난방은 가능할지언정 책임있는 논의는 애초에 기대하기가 어렵다. 정치적 논의에서 도덕에 관한 어휘를 가능한 한 배제해야 하는 까닭은 도덕을 부인하자는 것 아니라 논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용에 있어 가치와 이상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의를 논의하면서 확장된 의미의 이익(interest) 개념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 어

지금까지의 논의는 사실 정치적 진리가 개별 정치사회 내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실용주의(political pragmatism)에 의존하고 있다.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정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각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관, 정당화의 논리, 열망의 강도 등등이 서로 엮이어 산출하는 화음 또는 불협화음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개별 사회의 현실 모습을 고려한다는 것은 정의의 내용을 논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선결요건에 해당한다. 바로 이 때문에 실용주의적 태도가 어느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적 실용주의에 대한 본격적 해설 및 그 입장이 배분적 정의의 개념과 맺는 구체적 연관에 대한 해설은 앞으로 다루어야 한다.